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64
----------	-----

2021. 10. 14.(목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-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2조, 제8조, 제13조)
 - 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」
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 -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2 →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의2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→ 제1항에 따른
 - 진위여부 → 진위 여부
 - 당해 → 해당
 - 아니한다 → 않는다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마목 중 “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진위여부”를 “진위 여부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등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제2조 제3호”를 “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하여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2”를 “관하여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의2”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“부조리”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을 위반하는 행위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부조리”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위반하는 행위</p>
<p>제6조(신고의 방법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신고의 방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(생 략) 제7조(신고의 처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<u>진위여부</u>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 제8조(조사결과의 처리)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·조사 결과를 감사·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「<u>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.</p> <p>제9조(신분보장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도지사는 공직자인 신고자가 도지사에게 도내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,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당해</u>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 제7조(신고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<u>진위 여부</u>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조사결과의 처리)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·조사 결과를 감사·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.</p> <p>제9조(신분보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도지사는 공직자인 신고자가 도지사에게 도내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,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해당</u>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신고자의 보호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<u>아니한다</u>.</p>	<p>제10조(신고자의 보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<u>않는다</u>.</p>
<p>제12조(지급대상자)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<u>제2조 제3호</u>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12조(지급대상자)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<u>제2조제3호</u>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.</p>
<p>제13조(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)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2에 따른 충청북도 공적심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13조(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)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공적심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
<p>1.·2. (생략)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지급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<u>대하여</u>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<u>아니한다</u>.</p>	<p>제15조(지급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<u>대해서</u>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<u>않는다</u>.</p>
<p>1. ~ 6. (생략)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